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오 옥 자 의원)

의안 번호	25-2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5. . .

발의자: 오옥자, 강동오, 김승수, 남해석,
신종갑, 안미자, 이상원, 이한동,
채우진, 한선미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마포구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,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포구민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의 2)

3. 관계법령

가.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5. 3. 31. ~ 4. 7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의2의 제목 “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”을 “(자원봉사자의 우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등록된”을 “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.

1.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
2.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,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

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, 범위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 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 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 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자원봉사자의 우대 등) ① ----- 등 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 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사 람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 다. 1.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.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,000 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 병비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인 기준, 범위 및 방법 등은 규 칙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

【관 계 법 령】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(약칭: 자원봉사법)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16조의2(자원봉사자의 우대 등)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.

1.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
2.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,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김선희
연 락 처	02-3153-8342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